

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2331호

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,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폐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통합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도시개발사업 감면 규정의 조문체계 정비에 따라 조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며,

- 지방세 감면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면 여부 ‘결정’ 및 ‘통지’ 문구를 ‘안내’로 변경하고, ‘직접사용’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4. 27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